

# 교권 보호를 통한 건강한 선생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1차)

## 1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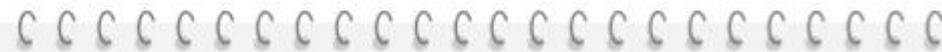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동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도 있습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행위로는 성희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을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먹살을 잡고 흔든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Q. 반드시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되나요?**

A.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판 89도1406; 대판 2000도5716)

**Q. 피해교원이 수면장애, 식욕감퇴,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상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 훼손되거나 장애가 초래될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됩니다.(대판 98도 3732)

##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1) 개념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Q.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수단에 차이가 있나요?

- A.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 수단의 인정범위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참조)

#### Q. 학생도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나요?

- A.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생의 범죄행위에도 교육·선도 조치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고,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연령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기준 연령은 만 14세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 14세 이하인 자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대상을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1호), 수감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보호시설 감호위탁(6호), 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9호·10호)가 있습니다.

(단, 2호 및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 3호 처분은 만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함)

범죄 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분 가능 / 보호 처분 가능 (일반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측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분 불가 / 보호 처분 가능
만 10세 미만	형사처분 불가 / 보호 처분 불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li> <li>• 주변 교원, 담당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li> <li>- 침해자 진정 조치</li> <li>-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li> </ul> </li> <li>• 학교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li> <li>-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li> <li>-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li> <li>•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li> </ul>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조치</li> <li>• 사안 조사(담당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li> <li>-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li> <li>- 치료·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li> <li>-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li> <li>-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사실 진술 또는 진술서 작성</li> <li>• 피해 증거 제출</li> <li>• 법률지원단, 교원치유지원 센터를 통한 상담</li> <li>•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li> </ul>

<p><b>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분쟁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li> <li>-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li> <li>-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li> </ul>
<p><b>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li> <li>•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전학·퇴학조치는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치는 시·도교육청 행정 심판위원회(사립학교는 민사소송)에 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li> </ul>
<p><b>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li> <li>-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li> <li>-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li> </ul> </li> <li>※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li> <li>•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li> <li>• 해결 확인, 재발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 지원</li> </ul>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p>사안 발생 초기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li> <li>• 주변 교원, 담당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li> <li>- 침해자 진정 조치</li> <li>-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li> </ul> </li> <li>• 학교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li> <li>-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li> <li>-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li> <li>•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li> </ul>
<p>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조치</li> <li>• 사안 조사(담당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li> <li>- 치료·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li> <li>-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li> <li>-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사실 진술 또는 진술서 작성</li> <li>• 피해 증거 제출</li> <li>• 법률지원단, 교원치유지원 센터를 통한 상담</li> <li>•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li> </ul>
<p>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분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진술 기회 부여</li> <li>-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li> <li>-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li> </ul>

<p><b>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분쟁 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 학교장에 서면 통보</li> <li>- 관할청에 심의 결과 보고</li> <li>•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시도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도 마찬가지)</li> </ul>	
--	--	--



<p><b>사후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li> <li>• 회복 지원</li> </ul>
--------------------	--	--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다만,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 관할청의 조치

#### 1) 관할청의 고발(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단,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피해교원의 형사고소가 요구되고, 관할청의 형사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보복·위협 등의 우려와 형사고소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현장에서 형사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관(관할청)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진다면 형사절차에 대한 교육현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 참고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부분은 피해교원이 침해자(학생인 경우 보호자)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할청은 이와 관련하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으로 피해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구상(求償)(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관할청은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비용 등을 부담하고, 침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관할청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더라도 침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침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관할청이 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면 그 비용은 침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3) 관할청은 보고 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교원지위법 제16조제2항)

#### 4) 관할청은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의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 관할청은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 부과액 등 관하여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 ☑ 학교장의 조치

### 1) 피해교원 보호조치(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상 규정된 보호조치로는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③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 2) 침해행위 내용 및 보호조치 결과 보고(교원지위법 제15조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및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3) 축소·은폐 금지(교원지위법 제16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 ☑ 참고

학교의 장이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의무를 하지 않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벌칙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 법률상 직무의무이므로 위반 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 내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18조)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2. 침해자에 대한 조치"에서 상술합니다.

## ☑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고,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②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sup>2)</sup>, ③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설치되고,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1) 교원지위법 개정 이전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일(2019. 10. 17.) 이전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5가지 징계조치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무교육 대상이라면 최대 10일의 출석정지 조치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짧은 징계기간 때문에 교원이 폭행·상해, 성폭력범죄 등 직접적이고 심각한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교육활동을 위해 곧 다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해자를 대면함으로써 피해교원은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피해교원이 교직을 그만두거나 침해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겨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 2)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법을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를 교원지위법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교원지위법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 학급교체, 전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상 출석정지 조치와 달리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을 받지 않습니다.<sup>3)</sup> 그렇다고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기간의 출석정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침해정도에 비례하는 적정한 기간으로 부과하여야 징계양정에 있어서 위법이 없습니다.
- 전학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필요적 병과), 전학 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병과). 단,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하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 10. 17.) 이전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 10. 17.) 이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 제17조
가능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 내의 봉사</li> <li>② 사회봉사</li> <li>③ 특별교육 이수</li> <li>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li> <li>⑤ 퇴학조치(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자<sup>4)</sup>에는 적용 안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에서의 봉사</li> <li>② 사회봉사</li> <li>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li> <li>④ 출석정지</li> <li>⑤ 학급교체</li> <li>⑥ 전학</li> <li>⑦ 퇴학조치(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li> </ul>

## ☑ 학생 외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 1)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교원과 학부모, 양쪽 모두가 잘못이 있는 복합사안에: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유력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 사이 관계회복, 분쟁의 조기해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 전에 양쪽 입장이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성립이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로써 해당 행위가 법상 금지되는 행위임을 공인받게 되며, 이후 사안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3) 형사 고소·고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형사고소·고발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교원이 원하면 관할청이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

## 04 모욕

###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

수업이 시작되어도 책상에 엎드려 계속 자고 있는 학생에게 그만 일어나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자 "씨X."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반대로 돌려 다시 엎드려 잡니다. 교사는 학생이 잠에서 깰 수 있도록 세수든, 잠시 서 있든 하라고 다시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학생은 "XX년. @#\$\$%^\$ 귀찮게 하네!"라며 교사를 향해 욕을 하고는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알아봅시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적 언행을 하는 학생과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칙에 따라 생활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모욕적 언행을 들었을 시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침해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03

### 피해교원 지원

####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3,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학교의 장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 범위 내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활동 침해 특별휴가 연간 일수 제한이 있나요?

A. 별도로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교육부 주요 질의회신 사례)

##### Q. 교육활동 침해 특별휴가의 세부 사용 방침이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자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내부결재 등 근거자료가 요구 됩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교육부 주요 질의회신 사례).

#### 법률 지원(교원지위법 제14조의2)

관할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을 참조)

#### 심리치유 지원(교원지위법 제17조)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 커뮤니티에 허위인 사실을 게시한 학부모 이야기

'00학교 0학년0반 교사000의 만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사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한 글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00월 00일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급 전체에 우리 아이가 소심하고, 피해의식이 있으니 말을 걸지 말라고 했다.', '00월 00일 우리아이를 불러서 "냄새 나는 것 같으니 잘 씻고 다녀"라고 했다.'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들이었고, 교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의 글들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교사는 어떤 학생의 학부모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된 글의 내용은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에게 매일같이 자신의 아이를 신경 써 달라며 전화 또는 문자로 전달했던 표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알아봅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설비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확대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대응을 지체할수록 더욱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의 약속

- 1) 학생을 명령조로 부르지 않는다.
- 2) 매(막대기)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 3) 학생에게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학생이 신체적인 수치심을 느낄 행동을 하지 않는다.
- 4)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을 혼을 내거나 면박을 주지 않는다.
- 5) 의도가 좋든 나쁘든 학생의 외모, 신체적인 특징, 성격 등의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지 않는다.
- 6) 학생의 단점 지적보다 장점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한다.
- 7) 학교에서 종교, 사는 곳,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적인 것을 조사할 때 선생은 편의를 위해서 공개적인 앞에서 거수 등으로 하지 말고 설문지를 걷어 직접 읽으면서 조사한다.
- 8) 학교 행사 등 반에서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해야 할 참여와 결정들을 학생들에게 일임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결정한다.
- 9) 학부모와의 면담 시 학생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면담한다.
- 10) 학생의 표현에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않는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교사용)

###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이게 몇 번째야... 선생님이!

답답교사가... 수권장

수업시간인데...

드르록

아! #후%\*##후@

우리 아이가 실수한 거예요! 바꿔 주세요!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모두 교육침해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와 구분되는 사안의 대응

어쩔

폭행, 육체적 상해 등 정신적인 상해 등을 입혔을 때

부당해...

징계

위원회

학교 내 갈등이나 징계 및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학교 내 갈등은 고충심사를, 징계 및 부당한 대우는 소청심사를 청구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사의 대응 절차

교원침해 사안 발생

학교에 업무 및 수업 조정, 조치 및 병가조치 요청 및 사안에 따른 병원 진료

조사 및 사실 확인

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선도위원회 개최(필요시)

법적 조치 및 사후처리

### 학생 조치

잘못 했습니다.

공개 사과

학생 공개사과, 반성문

### 피해교원 지원(교원치유지원센터)

힘드셨어요

심리상담(심리치료) 지원

교원 힐링 연수 지원

법원

법률 관련 상담 및 소송 지원